

## [서식 예] 항고장(소년원에 송치)

## 항 고 장

사 건 2000푸000 절도

보호소년 ○ ○ ○

결정년월일 2000.0.0.

결정취지 ○○소년원에 송치하는 보호처분

위 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복하므로 이에 항고합니다.

## 항고이유

- 1. 본 건 보호처분의 결정은 중대한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입니다. 원 심리 법원 조사관 □□□이 작성한 ○○○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내용에 본 소년이 불량 학생이고 동 사건의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재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중 일부는 소재불명으로 찾지 못하였으나 최근 연락이 되어 피해 전부를 회복해 주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.
- 2. 본 건 소년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저촉될 환경이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없는 선량한 아이로서 친구의 꼬임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분별없는 짓이었음을 충분히 뉘우치고 있을 뿐 아니라 보호자는 현재 은행에 재직중이고 보호자 가족들의 지적수준으로 보아 충분히 가정교육이 이루어질수 있으므로 소년법제 32조 1호 처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원결정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.

## 첨부서류

1. 피해자의 진정서



2. 학교장의 품행조사서

3. 보호자 재직증명서

1통

1통

2000년 0월 0일

위 보조인 변호사 ○ ○ ○ (인)



제출기관	원심소년부 (소년법 제44조1항)	청구기간	7일 (소년법 제43조2항)
청구권자	<ul><li>본인</li><li>보호자, 보조인, 법정대리인</li></ul>	관 할	항고법원(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)
제출부수	신청서 1부	관련법규	소년법 제43~47조
항고 대 상	보호처분(소년법 제32조1항) 1.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2. 수강명령 3. 사회봉사명령 4.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5.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6.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7. 병원,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8. 1개월 이내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9. 단기 소년원 송치		
불복절차 및 기간	·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(소년법 제47조) ·7일(소년법 제47조2항, 제43조2항)		